① 에세이의 기본 형식인 <서론-본론-결론>의 구성으로 에세이를 작성하려고 시도한 점은 바람직함. <장/절>을 구분해서 논의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성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② 하지만 참고한 문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인용한 부분에 대한 각주가 전혀 없음. 교재5장을 참고하여 인용한 내용에 대한 각주를 철저히 정리할 것.
③ 본론에서 개진하고 있는 내용이 충분하지 않음. 이 문제는 동물의 권리와 관련이 있으므로, 동물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도 함께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왜 다른 동물이 아닌 개에게 먼저 생명권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개진되어야 함.
④ 왜 개만 해당하는가? 돼지나 소는 왜 안 되는가? 만일 개가 인간과 더 친하기 때문에 라는 답변을 한다면, 이 또한 인간중심주의 사상에 기초하는 억견에 불과하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예컨대, 먼 훗 날 돼지가 현재의 강아지보다 더 인간과 친하다면, 그 때는 돼지 식용은 금지하고 개 식용은 허용할 것인가?
⑤ 본론의 논증을 더 치밀하고 깊이있게 보완 및 보강할 필요가 있음.

개 식용 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개고기가 되지 않을 자유

뷰티디자인경영학과
202111659 권효은

-서론

[문단이 바뀔 경우, 두 칸 들여쓰기] '복날 개패듯, 개 잡아먹고 동네 인심 잃는다, 개장국에 초친맛, 개잡듯' 등의 속담들에서 알 수 있듯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개고기를 먹어왔다. 기가 허한 복날, 몸이 안 좋을 때 보양식으로서 '보신탕'을 먹었고 먹을 음식이 없었던 1980년대, 가족들의 집을 지켜주던 누렁이는 보신탕이 되었다. 그러한 개고기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식용여부에 대해 찬반논쟁이 계속 되고 있다. 서울 88올림픽 개최를 앞둔 1980년대, 해외 동물보호단체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정부는 개고깃집을 외곽지역으로 옮기는 조치를 취한다. 또 보신탕을 사철탕, 보양탕 등 유사단어로 바꿔 사용하게 한다. 당시 공무원들에게는 개고기를 먹지 말라는 공문이 내려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때는 문화적 반발이 컸고, 사회적 논의로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개고기 논쟁이 다시 불붙은 것은 2002년 월드컵이였다. 당시 프랑스 여배우이자 동물애호가인 브리지트 바르도가 '월드컵을 유치하려면 보신탕은 먹지 말라'는 편지를 2002 한국 월드컵축구유치위원회에 보낸 사건이 있었다.

또한 지난 9월 27일 문 대통령은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뒤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 그동안 국민들의 합의를 이유로 방치 되어 왔던 개 식용은 동물권 보호와 생명존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향상된 만큼 이제 관련 법도 개선되어야 한다. 동물권 행동 단체 카라의 주장대로 '동물 보호'와 '개 식용'은 공존할 수 없다. 개 식용 금지법이

재정 된다면 현재 형식뿐인
‘동물보호법’에서 더 나아가 진정한 동물보호를 실현 할 수 있다.

-본론

3년전, 경기 부천시에서 불법 개 농장을 운영하던 이씨는 지난해 여름 '손님의 주문'을 받고 전기충격기를 이용해 개 1마리를 잡았다. 동물보호단체 ‘케어’는 이씨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개를 죽였다”라며 동물보호법 8조 1항 3조를 위반한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기봉을 이용한 개 도살이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동물학대’ 행위라면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씨의 유죄를 확정했다. 국내에서 개 식용 도살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한 첫 사례였다. 개를 도축할때는 쇠꼬챙이에 가정용 전기를 연결한 전기봉이라는 기구를 사용하여 개의 주둥이에 갖다대어 기절시킨다. 380V가 아닌, 그보다 약한 220V 가정용 전기이기 때문에 전기충격을 가하면 개가 앞다리 뒷다리를 쭉 뻗고 가만히 있지만 그것이 항상 의식 소실을 불러온다고 볼 수는 없다. *개는 그 과정에서 고통을 느끼는데 동물보호법 8조 1항 1호에는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8조 1항 2호에 따르면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도 금지되어있다. 1항 3호에 따르면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있다. 위의 동물보호법을 어기지 않고는 개 도살이 어렵다.*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개고기는 동물 학대인 것이다.1)***

개고기를 만들기 위한 도축은 동물보호법을 어긴다. 또한 도축에 관한 현행 법령은 개를 '가축'에 포함시키면서도 축산물에서 빼 놓고 있어 개 도살 과정은 법에 의한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60㎡가 넘는 사육장을 운영하려면 배출시설의 신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다수의 사육장은 분뇨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다. 개 사육장들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음식물쓰레기를 무단으로 수거해 개에게 먹이는 행위를 하여 가축분뇨법, 음식물쓰레기폐기법 등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

개고기 사육, 도살, 유통 과정에서 크고 작은 불법들이 일어나고 있다. 일반적인 축산농가의 경우 전문수의사가 수시로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배설물이나 폐수 처리 등도 고가의 장비로 친환경 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개 사육장은 위생검열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동물사육에 대해 위생 교육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업자들 또한 위생에 대해 전혀 의식을 하지 않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있다. 식용견을 사육하는 농장에서는 더욱 심각하다. 대부분이 도살장이 같이 겸비되어 있고 또 유통에서의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음으로 질병에 감염된 개가 언제 도살되었는지 아니면 유통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개고기는 축산물가공처리 법상의 식용 고기가 아니며따라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검사대상도 아니다. 위에서 말했듯 개는 행정법상 가축이 아니므로 개를 도축하는 환경이나 위생관리,유통과정에 대한 기준이 없다. **개고기는 위생의 사각지대에 있다.**(박재범. “개고기의 식용 합법화 찬반론과 위생문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2004. 서울) **그러므로 개 식용 금지법은 법으로 지정되어야한다.**

---

1) 출처를 분명하게 밝힐 것.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

–결론

위에 제시한 근거들은 개 식용 금지법이 법으로 지정되어야 할 근거들이지만, 보통 개 식용 금지법 지정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근거는 '개는 우리의 친구이고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해 온 친구이자 반려'라는 이유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근거는 논리적이지 못하다. 반려동물의 정의는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이고 이에 따라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이라면 개, 고양이, 토끼, 기니피그, 돼지, 닭, 오리, 앵무새, 도마뱀, 이구아나, 사슴벌레, 금붕어 등 그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반려동물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자주 먹는 돼지와 닭, 소 또한 반려동물이 될 수 있는데 이들은 왜 지금과 같은 처우를 받는가?
돼지와 소 또한 공감능력이 뛰어나고 반려동물 또한 될 수 있다. 개가 지금까지 우리의 친구이자 반려동물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은 인간이 다룰 수 있으며 귀엽고 작기 때문이였다. 소와 돼지를 도축할 때도 잔인한 방법으로 도축되며 고통을 느낀다. 사실 돼지, 소, 닭과 개의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육식을 전혀 하지 않고 대체가능한 식품을 먹는 비건을 해야 하지만 반발이 심할 것이며, 비현실적인 목표이다. 우리는 윤리적인 식생활을 해야 한다. 식용으로 희생되는 개체의 수를 줄여야 한다. 더 이상 생존을 위해 개고기를 먹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식용으로 희생되는 종을 늘릴 필요가 없다.
개를 먹는 사람들은 개 식용 금지법을 반대하고 싶을 것이며, 동물권을 보호하려는 사람들은 개 식용 금지법에 찬성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동물권에 대해 생각하며, 개는 우리의 오랜 친구이자 반려라고 생각하여 개고기 식용 금지법에 찬성하는 사람은 반려동물이라서 먹으면 안 된다는 비논리적이지만 충분한 이유가 있다. 개고기 식용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은 개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논리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는 개를 사랑하여 식용 금지법에 반대하는 사람을 설득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개고기 합법화는 법으로 금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동물보호를 위해서 줄여나가야 하는 것이 옳다.

참고문헌

-박재범.「개고기의 식용 합법화 찬반론과 위생문제 연구」,『국내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2004. 서울

-안용근,「한국의 개고기 식용의 역사와 문화」,『한국식품영양학회지』1999년, p.388

-"동물보호법 위반 않고 개 도살? 힘들죠", 애니멀피플, 2020-04-10 09:09, https://www.hani.co.kr/arti/animalpeople/companion_animal/936480.html#csidxb12bf97667d538e8fe86ecdfd0278ce

- "개식용을 금지해야하는 이유", 한국일보, 2021.10.19 04:30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01810000003733

-개고기가 되지 않을 자유, 한국일보, 2021.07.10
14:00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70916170000392

-[월드컵] 또 '개고기'논란 -중앙일보 2001.11.08 00:00
https://www.joongang.co.kr/article/4165670#home

-[팩트체크] 보신탕용으로 키우는 '개 사육장', 불법 아닌가요?,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2020.06.23.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62215313373634

"개고기를 식품원료로" 육견업자 소송냈지만...-이혜리 기자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07171206001

소, 돼지는 몰라도 개, 고양이는 먹지 말아주세요.-브런치

문 대통령이 던진 '개 고기 금지'..."내년 4월까지 '식용 종식' 논의", KBS
http://naver.me/GUL5ZIDdKBS

멜라니조이, 우리는 왜 개는 사랑하고 돼지는 먹고 소는 신을까, 모멘토, 2021.08.13